

검 토 보 고 서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1.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3
3.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23
4.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5.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6.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협력각서(MOC) 체결 동의안 97
7.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 117
8. 2024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5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윤희신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619호
- 제 출 자: 윤희신 의원
- 제출일자: 2023년 10월 25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30일

2. 제정이유

- 충청남도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4조, 제5조) 기본계획 및 지원
- (안 제6조, 제7조) 화재대피 훈련 및 체험훈련 환경조성
- (안 제8조) 홍보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기본계획)에서는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및 유지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 하며 ❶ 기본방향 및 목표, ❷ 피난기구 설치 현황, ❸ 추진계획 및 설치 방안, ❹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함
 - 안 제5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안 제6조(화재대피 훈련 등)에서는 교육감은 실습·체험 위주의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 훈련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안 제7조(체험훈련 환경조성)에서는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체험훈련을 위하여 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안 제8조(홍보 등)에서는 교육감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 대피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아무리 좋은 피난기구가 설치 되었다고 해도 사용법에 미숙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실습·체험 위주의 화재 대피 훈련 및 교육을 통해 완벽히 사용법을 숙지하여 유사시 화재 피난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4개 교육청에서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 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	2020. 12. 10.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06. 04.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	2021. 09. 1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	2021. 11. 10.

5. 참고 사항

- 가.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나. 관련법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없음
-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 마. 규제심사: 의견없음
-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충청남도에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
2. “피난기구”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및 유지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피난기구 설치 현황
3. 추진계획 및 설치 방안
4.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난기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화재대피 훈련 등) ① 교육감은 실습·체험 위주의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 훈련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체험훈련 환경조성)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체험훈련을 위하여 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교육감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3.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피난기구

- 1) 피난사다리

- 2) 구조대
- 3) 완강기
- 4) 간이완강기
- 5)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 1)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 2) 공기호흡기
- 3)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 1) 피난유도선
- 2) 피난구유도등
- 3) 통로유도등
- 4) 객석유도등
- 5)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피난기구 설치 등)

-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기구(피난사다리 등)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안 제5조(지원)

-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의 경우에도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교육기관에 피난기구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난기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교육기관별로 갖추어야 할 피난기구의 종류 및 물량, 시설·구조 여건에 따른 설치 가능여부 등 피난기구 설치 범위나 소요에 유동성이 크므로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충남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 추진이 가능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기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비용추계 제외

- 안 제6조는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체험위주 훈련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재난안전포털 사회재난행동요령(화재) 등 교육자료 활용이 가능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7조는 체험훈련을 위한 체험시설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에서 화재대피 등 안전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8조는 피난기구의 관리점검 및 화재대피 훈련 실적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충남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함을 전제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9조는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홍보 추진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급학교 등에서 소방훈련 실시 및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등에 대한 홍보(가정통신문 발송 등)를 실시하고 있고, 교육기관별 자체 홍보가 가능함에 따라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그 외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담 당 관

예산분석팀장

주 무 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박재용

홍종식

 041-635-5207(budget20@korea.kr)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윤희신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620호
- 제 출 자: 윤희신 의원
- 제출일자: 2023년 10월 25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30일

2. 개정이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위임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신체 및 교육 시설을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8조) 위험도평가지원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위임한 지진피해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해 위험도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진으로부터 더욱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 사항

- 가.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 관련법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없음
-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 마. 규제심사: 의견없음
-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운영) 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재해 정보 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평가지원단(이하 “평가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지원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운영) 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재해 정보 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평가지원단(이하 “평가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지원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
활동참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예방·대응, 내진
대책,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둔 「유아
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지진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학교에 지진 대응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
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내진보강 추진) 교육감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교육감은 지진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진·화산재해대책법[법률 제18284호, 2021. 6. 15.]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운영) 신설에 따라 비용 발생
 -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위험도 평가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위험도 평가지원단 운영에 따른 수당, 여비, 교통비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도 평가지원단’ 운영의 전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임
 - 지진 발생 사안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으로 자연 재난인 지진 발생 여부, 시기 및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사전 예측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재정 소요 추계가 불가함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담 당 관

예산분석팀장

주 무 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박재용

홍종식

 041-635-5207(budget20@korea.kr)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박정식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621호
- 제 출 자: 박정식 의원
- 발의일자: 2023년 10월 25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30일

2. 제안이유

-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무제한·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인식된 학생인권으로 인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로 인하여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하고
- 현 조례에는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의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함

-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함.

4. 검토 의견

-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후 충남을 포함한 전국 7개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된 상태임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는 2020년 6월 2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충청남도조례 제4780호(2020.7.10.)로 제정됨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 된 이후 존치 또는 폐지와 개정 등 관련해서 대립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주요 찬성 의견은 조례 제정 이후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된 상태이고, 성적 지향 및 정체성 차별금지에 따른 동성애, 성관계 조장 등 여러 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제시하고 있음
- 반대로 조례안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인권조례 폐지 주장이 합리성이 없으며, 충남교육청 인권정책에 큰 차질과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 증진 퇴행이 우려된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본 폐지조례안의 찬·반 입장이 대립하는 만큼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7개 교육청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동 조례의 폐지 또는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 서울시의 경우 주민청구로 접수된 동 조례의 폐지청구안이 12월중 의안 상정 예정이며, 광주광역시도 주민청구로 동 조례 폐지청구안이 접수되어 청구인명부 작성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경기도는 교육감발의로 동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임
- 또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4조(조례안 예고)에 의거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예고한 결과 조례안폐지 찬성 47명, 반대 1명, 총 48명 의견이 접수되었음

[참고] 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경기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2010. 10. 05.
광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2012. 01. 01.
서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2012. 01. 26.
전북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2013. 07. 12.
충남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2020. 07. 1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2021. 01. 08.
인천	인천광역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2021. 09. 01.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유아교육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중 학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③ 학생인권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등 학교 규정으로 최소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학칙과 학교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등은 학생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③ 보호자는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학교와 협력해야 한다.

④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자유권

제5조(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신체의 자유) ①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교직원과 학생은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폭언을 사용하지는 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육 목적과 무관한 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7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이 학생에게 대답을 요구할 경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동기와 신념을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방법은 비폭력·평화적이어야 하고, 학교의 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다만, 학교 내 집회의 시간·장소는 학습권 보호와 학생 안전을 위해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학교 안에서 허용된 게시공간에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 다만, 게시물의 내용은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방과 후 교외 문화행사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대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생에게 목적과 이유를 밝힌 후 학생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 개인수첩 등 사적기록물 제출을 요구하거나 열람해서는 안 된다.

④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 등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학생의 안전, 학교재산 보호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제11조(정보접근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도서관 이용 규정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습활동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

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 및 학습권 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학칙으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열람과 공개청구권)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의 학교기록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자신의 교육복지권 등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보호를 받을 권리) ① 학생은 학교에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구조 및 보호조치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학생을 발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및 보호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⑤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폭력을 신고한 학생을 적절하게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14조(징계에 대한 적법절차의 권리) ① 학생에 대한 징계절차는 학생인권을 존중하여 학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징계사유의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와 대리인 선임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교직원은 징계요구 전에는 학생을 잠재적 징계대상자 또는 비행행위자로 간주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해서는 안 된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을 결정·집행할 경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제2절 평등권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학교에서 배움과 학습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 학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년, 나이,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이력, 실효된 징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재정을 집행함에 있어 학생, 학급 및 동아리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지원해서는 안 된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6조(성인지 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성인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그 성과를 반영하여 교육활동에서 성평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교직원은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라는 이유로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서 편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차별에 대한 이의제기) 학교의 장은 차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절 참여권

제18조(학생 등의 의견제출권) ① 학생의 의견은 학년이나 나이에 상관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한 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교복, 앨범, 체육복 등을 선정할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한 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19조(학생자치활동과 참여의 보장) ①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 등 학생조직(이하 “학생자치활동조직”이라 한다)을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조직의 자율적 구성·운영 등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에 대하여 예산 편성, 유희시설 배정, 강사지원 등에 관한 학생의 요구를 존중하여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아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학생자치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제한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활동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업성적, 실효된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활동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⑥ 학생자치활동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⑦ 학생자치활동조직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 예산 및 시설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활동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권리
4. 학생자치활동조직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받을 권리
5. 학교축제, 체육대회, 학예회 등의 기획·운영·평가에 참여할 권리

⑧ 학생회는 학생대표 기구로서 제7항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학부모부담경비,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예산 및 결산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사항을 학교의 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의결에 참관할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학생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내용을 협의할 권리

제20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자치활동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 제35조에 따른 충청남도학생인권의회를 통하여 학생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및 학생의 교육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회 대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그 발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4절 교육복지권

제23조(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학생 인권이 보장되는 적절한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에게 학원수강이나 과외학습 등 사교육을 받도록 권장할 수 없다.

③ 학교의 장은 수업에 필요한 학습지원 물품을 제공하고 학생이 학습자료 등을 준비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교직원은 교육활동 중 교육내용과 관련 있는 학생의 질문기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해서는 안 된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에 없는 학교 안팎의 행사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⑥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 위기가정 학생, 예술·체육 활동 학생 등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복지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4조(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① 학생은 쾌적한 교실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실을 운영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화장실과 휴게시설 등 학교의 각종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교의 숲·화단 등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⑥ 학교의 장은 학교의 공간과 시설의 성인지적 설계와 설치를 통해 성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생리로 인한 고통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5조(학교급식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선호도, 영양 등을 고려한 균형 잡힌 학교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가급적 친환경 식재료와 지역 농·축·수·임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도지사와 교육감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질 좋은 학교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제26조(안전권) ① 학생은 신체, 생명, 재산 등에 대한 안전보장의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학생이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등하굣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 건물 등 시설물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에 표기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수시 안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7조(휴식과 문화의 권리) ① 학생은 휴식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문화공간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학생휴게실을 학교규모와 학생 수를 고려하여 확보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양교육, 초청강연, 공연, 전시 등 문화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된 대로 학생들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충분하게 보장해야 한다.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빈곤가정 학생, 장애가정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학생, 성소수자 학생, 일하는 학생, 임신·출산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전문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장애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인해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인 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때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제1절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제29조(학생인권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충청남도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학생인권의회 추천 학생
2.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도교육청 학생인권·생활 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
4.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추천 인사
5. 교직원단체 추천 교사
6. 학부모단체 추천 학부모
7.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임기는 당해 업무 담당 기간으로 하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임기가 종료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및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자문 및 시행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자문 및 조사결과에 관한 의견 표명
4. 학생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시
5.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
6. 학생인권에 관련된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하기 위한 권고와 의견 표명
7. 학생인권에 관한 연간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자문
9.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의 활동에 관한 평가
10. 기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한다.

2.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담당한다.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⑨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1조(학교학생인권위원회)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학생인권옹호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상당하는 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인권 신장과 관련된 실적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인권 신장과 관련된 실적이 있는 사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으며 그 가운데 인권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성평등, 시민사회운동 등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 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때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때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을 때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33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2. 학생인권에 관한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이를 통한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3.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직권 조사
4. 학생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6.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학생인권에 관한 홍보
8. 위원회 및 충청남도학생인권위원회의 업무 지원
9.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11. 소수자 학생 등을 위한 진로와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운영
12. 그 밖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매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제34조(학생인권센터)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으로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에는 상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④ 센터는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인권센터와 협력하여 학생인권을 보장·실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학생인권의회)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학생인권의회(이하 “학생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학생의회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선발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의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로 교육감이 선발할 수 있다.

③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감의 학생인권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제시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규정에 대한 교육감의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
7. 그 밖에 학생인권 보장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학생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학생인권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학생인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실천전략
3. 학생인권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방안
5. 학생인권과 관련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방안
6. 교육부 및 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7. 학생인권기본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3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1항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제36조제1항의 학생인권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학교의 장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8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입안하거나 법령에 근거한 계획(이하 “법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실시한 학생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때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법정계획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절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절차 등

제3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제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기구의 감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때
3. 구제신청 사유가 뚜렷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일 때
4. 그 밖에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구제신청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때

제40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학생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조사를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 피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학생과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관을 통해 현장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과 조사관의 자료요청,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제41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조사한 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가해자·관계인·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2. 학생인권 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학생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경고, 징계, 인권교육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생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의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아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관계인·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관계인·교육감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 교육감 등의 조치결과와 통보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42조(비밀유지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 조사관은 구제신청과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학생인권위원회와 학교학생인권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관련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위원회와 협의회가 공개 가능한 것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인권자료실) 교육감은 센터에 인권자료실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44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해야 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해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해 교육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⑥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제45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학생인권에 관한 학부모용,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조례 전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를 보호자와 학생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36조제2항제4호의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인권 홍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제46조(교직원과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2시간 이상 편성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 연수에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해야 한다.

제47조(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과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4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① 학교의 장은 학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최대한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표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49조(유치원에 대한 특례) 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35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② 제29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 3개월 안에 구성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622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3년 10월 26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30일

2. 개정이유

- 가족과의 교감 시간 제공 활성화(가족중심 여가활동), 학생들에게는 자연과의 밀착체험을 통한 인성교육 제고 등을 위해 폐교를 활용한 체험장 설치에 따른 행정기구(공주교육가족체험장, 보령교육가족체험장)를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분원으로 “공주교육가족체험장”
명칭과 위치 추가 (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 명 칭: 공주교육가족체험장
 - 위 치: 공주시 우성면 용봉입동로 524

-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분원으로 “보령교육가족체험장”
명칭과 위치 추가 (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 명 칭: 보령교육가족체험장
 - 위 치: 보령시 주포면 향교말길 129

4. 검토 의견

○ (개정내용)

- (공주교육가족체험장)은 미활용 교육재산(구 우성초 봉현분교장)을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체험장 설치 계획 수립(2021.5.7.)후 공사 준공을 완료(2023.8.7.)하여 야영장업 등록 신청(2023.10.10.)을 마친 상태로 2024년 3월 중 개장을 준비하고 있음

- (보령교육가족체험장)은 구 주포학생야영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자연과 함께하는 야외 체험교육환경 확대로 숲, 생태, 기후,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체험하고, 느끼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체험장 설치 계획 수립(2021.5.7.)후 제343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2023.4.6.) 받아 공사 착공(2023.8.28.)했으며 2024년 3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음

○ (종합의견)

- 직속기관 분원으로 설치되는 공주와 보령 교육가족체험장은 예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개장 예정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교육가족체험장은 부모와 자녀 간 캠핑 체험을 통해 대화와 소통을 강화 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야외 체험교육을 실시하면서 환경의 중요성과 가족의 소중함, 건강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가족체험장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나. 관련법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2조

다. 입법예고: 의견없음(2023. 10. 6. ~ 2023. 10. 16.)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제외 대상

라.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해당없음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부여교육가족체험장”을 “부여교육가족체험장과
공주교육가족체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주교육가족체험장: 공주시 우성면 용봉입동로 524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충청남도내 학생과 교육 가족 구성원 간 연중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만의 특색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학부모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양수련원 분원으로
보령교육가족체험장을 둔다.

③ 해양수련원과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수련원: 보령시 대천항로 240

2. 보령교육가족체험장: 보령시 주포면 향교말길 129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설치) ① (생략) ② 충청남도내 학생과 교육 가족 구성원 간 연중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만의 특색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학부모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수련원 분원으로 <u>부여교육가족 체험장을 둔다.</u> ③ 안전수련원과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u><신설></u>	제24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부여교육가족 체험장과 공주교육가족체험장-----.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u>공주교육가족체험장: 공주시 우성면 용봉입동로 524</u>
제27조(설치) ① (생략) ② <u>해양수련원은 보령시 대천항로 240에 둔다.</u> <u><신설></u>	제27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u>충청남도내 학생과 교육 가족 구성원 간 연중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만의 특색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학부모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양수련원 분원으로 보령교육가족 체험장을 둔다.</u> ③ <u>해양수련원과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u> 1. <u>해양수련원: 보령시 대천항로 240</u> 2. <u>보령교육가족체험장: 보령시 주포면 향교말길 129</u>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 및 분장사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두는 과·담당관,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2(기관의 운영 등)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5조(국의 설치)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국 및 교육국과 행정국을 둔다.

제6조(기획국) 기획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3. 국정과제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4.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5. 제안제도 운영 및 생활공감 정책 개발
6.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7. 행정권한 이양, 위임 및 위탁
8.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평가 관리
9. 성과관리 운영
10. 지방자치단체 등 대외기관과의 협력계획 수립 및 조정
11. 학교업무 최적화
12.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관리
13.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관리
14. 학교회계 운영지도 및 예·결산
15. 학교 표준교육비 관리
16. 도의회 업무협력 및 각종위원회(설립·폐지제외)관리
17.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18. 소송, 행정심판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19. 고등학교 과정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특수학교 포함)의
이전·설립·폐지

20. 고등학교 과정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특수학교 포함)의 학생배치 계획 및 학급편성
21. 교육환경 평가에 관한 사항
22. 교육복지정책총괄·조정
23. 교육복지우선사업 지원
24. 저출산·고령 사회 업무

제7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혁신 기획 및 추진
2. 학교문화 개선 사업
3.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
4. 초등돌봄·방과후학교 운영
5. 학부모 정책 추진
6. 진로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7.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지원
8.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9. 평생교육진흥과 평생교육시설 관리
10.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학생교육문화원(평생교육분야)·남부 및 서부평생교육원 운영 지도감독
11. 고등학교과정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교육과정 연구와 운영 지도
1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와 정책연구·시범학교 운영 지도,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조정
13. 유아교육 정책 기획·운영

14. 사립유치원 지원 및 운영지도
15.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 충무교육원 ·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수련분야) ·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운영의 지도 및 감독
16.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이하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정원 · 인사 · 포상 · 징계 · 연수관리 · 후생복지 · 교권보호 및 지위향상
17. 교원단체 지원
18.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하의 검정고시
19. 중등교원이하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관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20.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21.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종합대책
22. 인성 및 인권 교육
23. 학생기숙사 · 생활관과 학교매점 운영관리
24. 민주시민 · 통일 · 안보 · 보훈교육관리
25. 과학교육 · 영재교육 · 경제교육 · 환경교육관리
26. 직업 · 기술 · 가정교육관리
27. 외국어교육 운영 및 환경 구축
28. 국제교육 기획 및 운영
29. 다문화 교육 기획 및 운영
30. 컴퓨터교육과 정보연수관리

31. 체육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평가
32. 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
33.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34.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35. 체육교육 및 행사관리
36. 청소년단체 육성
37. 특수교육 정책 기획·운영
38.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39. 통합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40. 보건의교육 및 학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1. 학교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42. 학교급식관리
43.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및 보호구역 관리

제8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청사 및 차량·당직관리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
4.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수련분야 제외) 지도감독
5.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제외)의 임용·인사·포상·징계·복무·교육
훈련 및 지방공무원의연금·급여 관리
6. 민원
7. 교육통계관리
8. 기록관운영
9. 공무원단체

10. 사립학교 및 법인관리
11.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관리
12. 공익법인관리
13. 교육공무직 정원 및 총액인건비 관리
14. 교육공무직 인사 및 노무관리
15.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회 운영
16. 교육·행정정보화 계획수립 추진 및 조정
17. 교육행정전산화 및 정보화교육 지원
18. 자금의 운용 및 회계 관리
19. 교육금고관리
20. 교육경비 확보
21. 에너지이용합리화
22. 계약심사 분석 및 실적관리
23. 국·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
24.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시설사업 지도감독
25.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6. 민간투자사업(BTL)운영관리
27. 교육시설관리
28. 안전교육관리
29. 충청남도학교안전공제회 감독
30. 보안 관리
31. 비상계획 관리
32. 학교시설안전관리
33. 재난안전관리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제9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 및 교육과정과 평가체제를 연구·개발하고 정보교육 현장지원으로 교육공동체의 미래역량을 함양하여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이하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에 둔다.

제10조(원장) 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업무)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시책 연구·개발
2. 미래형 평가체제 구축
3. 교육자료 연구·개발
4.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5. 학교교육 연구 활동
6.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7. 교직원 정보화 연수
8. 충남교육포털(에듀스충남) 운영
9. 충남 미디어센터 운영
10. 삭제
11. 삭제

12.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13. 정보관련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이용촉진
14. 정보시스템 운영
15.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운영
16. 학력향상지원센터 운영
17. 그 밖에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제1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등의 자질함양과 창의적인 직무능력을 배양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연수원은 공주시 연수원길 88-25에 둔다.

제13조(원장) 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업무) 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수의 기획 및 조정
2.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연수
3.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등의 연수
4. 연수결과의 분석과 연수교재의 연구·개발 및 제작관리

제3절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제15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교직원들을 위한 교육행사와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전인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이하 “학생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생교육문화원은 천안시 동남구 옛농고1길 41에 둔다.

제16조(원장) 학생교육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업무) 학생교육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교직원의 문화예술교육 및 공연·전시 운영
2.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및 예술분야 교원연수
3.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정보제공
4.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학생교육문화원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절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제18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 및 주민에게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생교육원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843에 둔다.

제19조(원장) 평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업무) 평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평생교육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평생교육정보의 수집·제공·상담
3. 평생교육시설·단체의 연계체제 구축
4.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5.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
6. 학생의 진로교육 및 자유학기제 체험학습 지원
7. 지역평생교육원 및 학교의 평생교육 지원
8. 평생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9. 도서·자료의 수집·분류·열람·대출
10. 디지털자료실 운영
11. 독서 진흥 및 독서 지도에 관한 업무
12. 교육·문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1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5절 충무교육원

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충무공을 비롯한 성현들의 충·효 정신을 이어 받게 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도덕성 함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격체로 기르기 위하여 충무교육원을 둔다.

② 교육원은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93에 둔다.

제22조(원장) 충무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업무) 충무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민주시민의 자질함양과 자아실현을 위한 소양계발 교육
2. 심신수련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집단교육
3. 충무공의 생애와 업적 연구 및 보급
4. 학생의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및 보급
5. 본청, 교육지원청 또는 관계기관의 위탁교육

제6절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제2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호연지기와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이하 “안전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충청남도내 학생과 교육 가족 구성원 간 연중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만의 특색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학부모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수련원 분원으로 부여교육가족체험장을 둔다.

③ 안전수련원과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수련원: 공주시 연수원길 88-42
2. 부여교육가족체험장: 부여군 세도면 인세로 40-3

제25조(원장) 안전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업무) 안전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수련활동 계획 및 운영
2. 학생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학생안전체험 계획 및 운영
4. 안전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7절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제27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해양수련 활동 및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양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해양수련원은 보령시 대천항로 240에 둔다.

제28조(원장)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업무) 해양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수련활동에 관한 계획 및 운영
2.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
3. 수련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활용
4. 그 밖에 수련활동 및 연수장소 제공에 관한 사항

제8절 지역평생교육원

제3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지역문화센터로서 각종 학습자료를 비치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의 학습기회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평생교육원을 둔다.

② 지역평생교육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1조(원장) 지역평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업무) 지역평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평생교육상담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자료의 수집·이용 제공
4. 독서진흥 및 문화 활동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6. 그 밖에 지역평생교육원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절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제33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과학·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학생교육, 교원연수, 연구활동 등을 지원하고 시민생활의 과학화와 국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과학교육원은 아산시 순천향로 624-30에 둔다.

제34조(원장) 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업무) 과학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과학·영재교육 연구·개발
2. 과학·영재교육 자료 연구·개발
3. 과학·영재교육 교원 연수
4. 과학·영재교육 행사 및 경진대회
5. 과학·영재교육의 탐구·체험활동
6.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7. 발명교육 진흥 및 발명교실 운영
8. 충남수학체험센터 운영
9. 그 밖에 과학교육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절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제36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참여와 배움의 국제교육과 외국어교육, 공감과 존중의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으로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다문화학생 증가에 따른 공감과 존중의 다문화 교육,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교육 등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세계시민 교육을 위해 국제교육원 분원으로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를 둔다.

③ 국제교육원과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교육원: 공주시 연수원길 88-23
2.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 234

제37조(원장) 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업무) 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2. 외국어교육에 관한 사항
3. 외국어교육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외국어교육 학생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6.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7.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제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절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제39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정보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이하 “유아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체험활동과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원 분원으로 북부체험교육원과 남부체험교육원을 둔다.

③ 유아교육원과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원: 홍성군 홍북읍 금북로 390
2. 북부체험교육원: 아산시 신리길 64
3. 남부체험교육원: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1523-47

제40조(원장) 유아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업무) 유아교육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원, 학부모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2절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제4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진로 체험, 진로 상담 등 진로 교육을 내실화하고,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융합 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이하 “진로 융합교육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로융합교육원은 홍성군 홍북읍 침단산단6길 72에 둔다.

제43조(원장) 진로융합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업무) 진로융합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진로진학교육 추진계획 수립·추진
2. 진로융합활동 개발과 운영
3.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4. 교직원 진로진학 역량 강화
5. 학부모 진로진학 연수 운영
6. 진로진학 자료개발과 정보 제공
7. 그 밖에 진로융합교육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제45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지식·정보의 제공과 문화 활동 및 평생 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46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7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2. 지역주민과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등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활동의 주최 또는 권장
6. 도서관 업무에 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란 중 총계 “35”를 “36”으로 하고 본청(직속기관포함) “20”을 “21”로 하며,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란 중 총계 “318”을 “317”로 한다.

관련법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41호, 2022. 4. 20. 시행]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 4. 7. 시행]

제5조(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① 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4.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고려한 효율성
5.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여부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 가능성

② 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직속 기관 중 분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별도의 소요경비 없음

※ 인건비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총 정원 범위내 운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제4조(대상의안)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623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3년 10월 26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30일

2. 개정이유

- 교육부 국정과제 추진과 학교 신설 등에 따른 정원 조정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4,355명→4,439명(84명 증원)

- (안 제2조제2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3,992명→4,071명(79명 증원)

※ 교육전문직원 제외

- (안 제2조제3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두는 교육 전문직원 정원: 353명→358명(5명 증원)

나. 내역(84명 증원)

- 2024년도 교육부 배정 국정과제 등 추진 인력
 - 일반직 38명, 교육전문직원 5명(총 43명)
- 2024년도 신설 학교 및 기관 배치 인력
 - 일반직 41명

4. 검토 의견

- (근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함
- (개정내용) 본 조례안 2024년도 교육부 국정과제 추진과 학교신설 등에 따라 일반직과 교육전문직 84명 증원된 지방공무원 총수 4,439명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 안 제2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355명에서 4,439명으로 84명 증원
 - 일반직공무원 정원은 3,992명에서 4,071명으로 79명 증원
 - 교육전문직 정원은 353명에서 358명으로 5명 증원
- 안 제2조의 조정 내역을 보면,

(2024년도 교육부 배정 국정과제 등 추진 인력)

일반직 38명, 교육전문직원 5명 총 43명

(2024년도 신설 학교 및 기관 배치 인력) 일반직 41명

○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 배정 국정과제 추진 인력(43명)과 신설학교 및 기관배치 인력(41명) 등 84명 증원된 지방공무원 총수 4,439명을 반영하는 것으로
- 2024년 교육부 국정과제 초등 전일제교육 등 8개 사업과 2024년도 신설 학교인 아산 산동초등학교 등 16교와 신설 기관인 당진 학생수영장 등 2개 기관에 일반직 정원을 증원 배정하여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관련법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 입법예고: 의견없음(2023. 10. 11. ~ 2023. 10. 16.)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제외 대상

라.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해당없음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355명” 을 “4,439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992명” 을 “4,071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353명” 을 “358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의 회 사무처	본 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4,439				
정 무 직 계	1				
교 육 감	1		1		
일 반 직 계	4,060				
3 급	5		5		
4 급	22	1	20	1	
5 급 이 하	4,020				
전문경력관	13				
연 구 직 계	16				
연 구 관	0				
연 구 사	16				
별 정 직 계	4				
4 급 상 당	1		1		
5급 상당 이하	3				
특 정 직 계	358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6		21	15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2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4,355명</u>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u>4,439명</u>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 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u>3,992명</u>	2. ----- ----- ----- ----- <u>4,071명</u>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 지원청 소속기관 교육전문직원 정원 : <u>353명</u>	3. ----- ----- ---- <u>358명</u>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33조제1항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35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 10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3,992명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전문직원 정원 : 353명

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 특정직	정무직 · 별정직
비 율	99%이상	1%이내

※ 일반직은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및 지방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전문경력관
비 율	2%이내	8.5%이내	33%이내	44%이내	12%이상	0.5%이내

2.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구관	연구사
비 율	0%	100%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이하
비 율	50% 이내	50% 이상

4. 특정직공무원

구 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비 율	30%이내	70%이상

[별표 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의 회 사무처	본 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4,355				
정 무 직 계	1				
교 육 감	1		1		
일 반 직 계	3,981				
3 급	5		5		
4 급	22	1	20	1	
5 급 이 하	3,941				
전문경력관	13				
연 구 직 계	16				
연 구 관	0				
연 구 사	16				
별 정 직 계	4				
4 급 상 당	1		1		
5급 상당 이하	3				
특 정 직 계	353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6		21	15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17				

관련법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 4. 7. 시행]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 학교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변경

※ 일반직 등 79명, 교육전문직원 5명 인건비

2. 근거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④ (생략)

3.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4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산정 단가(교육부 기준) 적용

나. 추계 결과

(금액단위: 천원)

연간 인건비 추계		연도별 인건비 추계					
산출기초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1. 정규직인건비	7,216,570	7,216,570	7,396,984	7,581,909	7,771,457	7,965,743	37,932,663
가. 교육전문직원 128,991천원×5명=	644,955	644,955	661,079	677,606	694,546	711,910	3,390,096
나. 일반직 83,185천원×79명=	6,571,615	6,571,615	6,735,905	6,904,303	7,076,911	7,253,833	34,542,567

※ 연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7,216,570	7,396,984	7,581,909	7,771,457	7,965,743	37,932,663
보통교부금		7,216,570	7,396,984	7,581,909	7,771,457	7,965,743	37,932,663
세 출		7,216,570	7,396,984	7,581,909	7,771,457	7,965,743	37,932,663
정규직인건비		7,216,570	7,396,984	7,581,909	7,771,457	7,965,743	37,932,663
재원 조달		7,216,570	7,396,984	7,581,909	7,771,457	7,965,743	37,932,663
의존 재원	소 계	7,216,570	7,396,984	7,581,909	7,771,457	7,965,743	37,932,663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7,216,570	7,396,984	7,581,909	7,771,457	7,965,743	37,932,663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타(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연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 적용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협력각서(MOC) 체결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6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624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3년 10월 26일
- 회부일자: 2022년 10월 30일

2. 제안 이유

- 급격한 사회변화와 다양한 위기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공존과 평화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미래 교육체제 전환 필요
- 학습자 주체성을 키우는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의 하나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지원하는 과정중심 평가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역량을 갖춘 세계시민 양성 필요

-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와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MOC) 체결을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추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근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
- (목표) IBDP* 과목의 한국어 교육과 평가 지원(단, IB 공식 언어는 아님)
 - IB 프로그램(PYP, MYP, DP, CP)* 도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
 - *PYP(초등학교), MYP(중학교), DP(고등학교), CP(직업계고)
 - IB 문서와 전문성 개발 워크숍 자료 제공
 - IBDP 관련 지원 문서 한국어 번역
 - 충남의 IB 조직 역량 구축(한국어, 영어에 능통한 IB교원 연수)
 - 대입과 IB교원 양성을 위한 IB 학교와 대학 간 생태계 구축
 - *IBDP(IB Diploma Programme): 고등학교 과정 IB 프로그램
- (한국어 번역 대상) DP 핵심요소 3 및 과목 4, 프로그램 운영 안내서 등
 - 논문, CAS, TOK, 역사, 생물학, 화학, 수학 분석 및 접근
 - ※ 언어습득(영어) 외 1과목 영어로 진행
 - IB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사 지침서 및 학습자료
- (의무부담금) 이중언어 DP(한국어-영어)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한 IB 도입 시도교육청 부담금(1년 단위 재 산정)
 - IB DP 및 DP 외부평가 한국어화 번역
 - 한국어 IB 전문 교원 양성 및 역량 강화 연수
 - DLDP* 프로젝트 인건비, 기타 행정비용 및 관리 수수료 등
 - *DLDP(Dual Language Diploma Programme) 이중언어 DP

- (준거법) 스위스 상공회의소 중재기관의 스위스 국제 중재 규칙
- (기밀유지) 양자 간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은 모든 정보
의향서(LOI)와 협력각서(MOC) 내용 포함
- 추진 계획
 - (체결대상)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
 - (체결시기) 2024. 5. (IB 도입 시도교육청 협의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력기간) 2024. 7. ~ 2029. 6.(5년마다 MOC 갱신)
 - ※ IBO 회계연도: 당해연도 7월 1일 ~ 차년도 6월 30일
 - (체결장소) 충청남도교육청

4.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창의력과 협업, 비판적 사고 등 미래핵심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중심의 지식 전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실천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 역량을 갖춘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 바칼로레아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협력각서(MOC) 체결을 위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비용추계 결과 의무부담금이 5년기준 3억원씩 총 15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시·도교육청 의무부담금 발생 기준은 무엇인지? 의무부담금외에 사업집행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됨

5. 참고사항

가.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협력각서(MOC) 체결 동의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다. 비용추계서

라. 2023 충남형 IB학교 운영 계획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협력각서(MOC) 체결 동의안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과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의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MOC)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충청남도교육청과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의 ‘국제 바칼로레아 (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협력각서(MOC) 체결’ 개요

가. 체결대상: 충청남도교육감,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

나. 체결시기: 2024년 5월 중(시도교육감 협의회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체결장소: 충남도교육청

2. 주요내용

가. 목표: IBDP(IB 고등학교 과정) 과목의 한국어 교육과 평가 지원,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

나. 의무부담금: 이중언어 DP(한국어-영어)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한 IB 도입 시도교육청 부담금(1년 단위 재 산정)

다. 기밀유지 : 양자 간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은 모든 정보

3. 소요예산: 약 1,500,000천원(5년 기준)

- 이중언어 DP(DLDP, Dual Language Diploma Programme) 운영에 따른 한국어화 번역, 한국어 IB 전문 교원 양성 및 역량 강화 연수, DLDP 프로젝트 인건비, 기타 행정 비용 및 관리 수수료 등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9241호, 2023. 9. 22. 시행]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과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의 협력각서에 따른 도교육청 의무부담금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IB DP 및 DP 외부평가 한국어화 번역과 한국어 IB 전문 교원 양성 및 역량 강화 연수, DLDP* 프로젝트 인건비, 기타 행정비용 및 관리 수수료 등 이중언어 DP(한국어-영어)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한 IB 도입 시도교육청 의무부담금 발생으로 5년간 약 15억원 내외의 지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DLDP(Dual Language Diploma Programme) 이중언어 DP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의무부담금	1,5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 추계 기준: 2023년 IB 프로그램 도입 타시도교육청 부담액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2023 충남형 IB학교 운영 계획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

I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②항
 - 초·중등교육법 제61조와 동법 시행령 제105조
 - 제18대 교육감 공약이행계획
2.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2-10. 충남형 IB학교 운영 준비

II 배경

- 급격한 사회변화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공존과 평화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미래 교육체제 전환 필요
-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과 사회적 활용도가 높은 실용적 지식 습득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 요구
-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창의력과 협업,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등 미래 핵심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강조
-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실제 맥락 속에서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 실천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교수 중심의 지식 전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의 능동적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으로 이행 필요
- 모든 학생의 의미 있는 성장과 학습을 촉진하는 평가 체제 전환 필요

III 목적

- 학습자 주체성을 키우는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과정-수업-평가 지원을 위한 과정중심 평가 실현
-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역량을 갖춘 세계시민 양성

IV 방침

- 초·중·고 연계형 충남형 IB학교 운영으로 교육과정 연속성 보장
- 교육지원청 중심 초·중·고 연계 충남형 IB 준비학교 선정 지원
- 충남형 IB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확보를 위한 자율학교 지정
- IB 준비학교 대상 관심학교-후보학교-인증학교로 절차 이행 지원
- 학교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고등학교 과정 IB학교 유형 자율 선택
- 단위학교 IB 교육과정 적용 지원을 위한 충남형 IB학교 현장 지원단 운영

V 충남형 IB학교 용어 정의

○ 충남형 IB학교란?

충남형 2030 미래학교의 한 유형으로,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IBO)에서 운영하는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충남형 IB 준비학교-관심학교-후보학교-인증학교의 단계를 거쳐 초-중-고 연계형으로 적용·운영하는 학교

○ 충남형 IB 준비학교란?

IBO에 관심학교로 공식 등록하기 전에 단위학교가 IB 교육과정에 대해 탐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에서 운영·지원하는 학교

※ IB학교란?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에서 1968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 161개국 5,600여 학교에서 운영 중인 국제 공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관심학교-후보학교의 단계를 거쳐 월드스쿨로 인증받은 학교

VI 추진체계(1기 2023~2026)

지표	행복한 세계시민의 요람, 충남형 미래학교 실현			
도입 단계	2023	2024	2025	2026
	준비학교 관심학교	관심학교 후보학교	관심학교 후보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충남형 IB학교	준비학교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IB학교 학습과 탐구	IB학교 철학 공유	IB학교 여건 충족	IB학교 교육과정 운영
추진 과제	1 충남형 IB학교 운영 기반 구축			
	-충남형 IB학교 현장 지원단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IB학교 교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충남형 IB학교 단계별 지원			
	2 충남형 IB학교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IB학교 업무 최적화를 위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IB학교 교육과정 문해력과 서·논술형 평가역량 신장 -IB 교육과정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교육시설 조성			
	3 충남형 IB학교 공감대 형성			
	-충남형 IB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 -함께 성장하는 충남형 IB학교 협의체 운영 -교육공동체 대상 충남형 IB학교 이해 확산			
	4 미래를 여는 충남형 IB학교 본보기 창출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본보기 창출 -학습자 주도성 기반 과정중심 평가 모형 제시			
역할	교육청	교육지원청	IB학교	유관기관
	IB학교 운영 기반 구축	IB학교 이해 확산	충남형 IB학교 운영	IB학교 운영 지원

VII 세부 운영 계획

추진과제 1

충남형 IB학교 운영 기반 구축

충남형 IB학교 현장 지원단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1. 충남형 IB학교 현장 지원단 운영

- 가. 목적: IB학교 운영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한 충남형 IB학교 운영 지원
- 나. 기간: 2023. 1. ~ 2024. 2.
- 다. 구성: 충남형 IB학교 교원, 교육과정 전문 교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15명 내외)
- 라. 내용: 충남형 IB학교와 초·중·고 연계 시범 교육지원청 운영 지원
 - 충남형 IB학교 운영 계획 수립·시행 지원
 - 학교급별 IB학교 관련 연수(PYP, MYP, DP, CP) 이수
 - 충남형 IB학교 운영 안내 자료 제작 지원
 - 충남형 IB학교 홍보자료 제작·보급 지원
 - 충남형 IB 준비학교 대상 관심학교-후보학교-인증학교 이행 지원
 - 그밖에 충남형 IB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

2. 충남형 IB학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가.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 목적: 충남형 IB학교 다양한 운영 방안 공유를 통한 동반 성장
 - 대상: 충남형 IB학교 관심 교원
 - 내용: IB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공유와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
 - 방법: 충남형 IB학교 현장 지원단 연계 조직·운영
- 나. 교육전문직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 목적: 충남형 IB학교 운영 체계적 지원을 위한 소통과 협업
 - 대상과 협업 내용

기관명	대상	협업 내용
교육혁신과	업무 담당자	충남형 IB학교 기본계획 수립·운영
미래교육추진센터	미래교육 업무 담당자	충남교육 중장기 계획 이행에 따른 업무 이해·지원
교육과정과	초·중·고 교육과정 담당자 자율학교 담당자	IB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업무 지원 자율학교 지정과 운영 지원
미래인재과	직업계고 교육과정 담당자	IB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업무 지원
교원인사과	교원 인사 업무 담당자	충남형 IB교원 수급과 배치 지원
미래인재과	세계시민교육 담당자	주제 중심 융합 수업 지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미래학교추진 담당자	학교공간 재구성 업무 지원
진로융합교육원	진로진학 업무 담당자	상급학교 진로진학 관련 업무 지원

IB학교 교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1. IB학교 전문 교원 양성 과정 운영과 지원

가. 충남형 IB학교 이행 단계별 교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지원

- 목적: 충남형 IB학교 교육과정 운영 역량 함양
- 대상: 충남형 IB학교 교원, 충남형 IB학교 현장지원단, 교육전문직원, 관심 교원
- 일정: 추후 별도 계획 안내 예정
- 충남형 IB학교 단계별 전문 교원 양성 과정

단계	대상	연수 과정	주관기관	비고
IB 준비학교	학교장	Category 1	충남교육청 IBO	IBO 또는 IBEC 기관이 개설한 연수에 학교 차원으로 이수 가능 (단, IB 준비학교 코디네이터 연수 과정은 2023. 6월 중 대면 연수 예정)
	코디네이터(담당자)	Category 1		
IB 관심학교	학교장, 코디네이터	Category 1		
	교사	Category 1		
IB 후보학교	학교장, 코디네이터, 교사	Category 1		
	교사	Category 2		
IB 인증학교	교사	Category 2		
	학교장, 코디네이터, 교사	Category 3		

※ IBEC: International Baccalaureate Educator Certificate

2. 충남형 IB학교 해외 교류 프로그램 운영·지원

가. 해외 IB학교 장기 파견 프로그램 운영 준비

- 목적: 충남형 IB학교 실천 역량 강화
- 대상: 충남형 IB학교 교원(교육전문직 포함)

-기간: 6개월(예정)

-장소: 싱가포르 IB 인증학교

-내용: 해외 IB 인증학교 파견 근무

※ 준비기간을 거쳐 2024학년도 이후 실제 프로그램 운영 예정

나. 국제 IB학교 총회 참석 지원

-목적: IB학교의 국제적 흐름 파악을 통한 미래형 IB학교 운영 역량 함양

-대상: 충남형 IB학교 교원, 교육전문직원, 충남형 IB학교 현장지원단

-시기와 장소: IBO 별도 계획

다. 일본 IB학교 운영 사례 견학

-목적: 충남형 IB학교 운영 모형 설계

-대상: 업무 관련 교육전문직원

-시기: 4월 중(대상 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장소: 일본 히로시마현 교육청과 IB학교

-내용: IB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역할 분석과 IB학교 운영 사례 탐색

3. 주제 중심 융합 수업 지원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연수 지원

가. 목적: 충남형 IB학교 융합수업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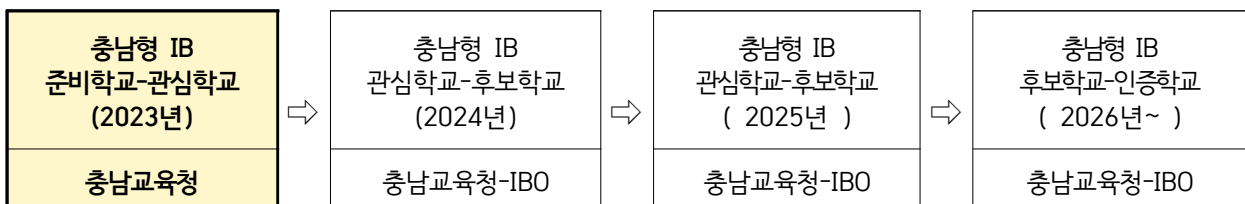
나. 시기: 연중

다. 대상: 충남형 IB학교

라. 내용: 세계시민교육 주제 중심 융합수업 운영 실제

충남형 IB학교 단계별 지원

1. 충남형 IB학교 운영 단계



2. 충남형 IB학교 단계별 운영 내용

단계	세부내용	운영기간	운영기관
충남형 IB 준비학교	IB교육과정에 대해 학습하고 탐구하는 학교 -IB학교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한 학습 활동 -IB 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등 -교육공동체 대상 IB 교육과정 이해 확산 -IB학교 학교장 연수 이수 권장 -IB 관심학교 준비 -연회비 무료	6개월 ~ 1년	충남교육청
충남형 IB 관심학교	IB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학교 -IB 철학 공유 -IB 후보학교 준비 -교육공동체 대상 IB 교육과정 이해 확산 -IB학교 필수 연수 이수(학교장, 코디네이터, 교사) -연회비 무료	6개월 ~ 1년	충남교육청 IBO
충남형 IB 후보학교	인증에 필요한 제반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학교 -전문성 개발 필수 인증 요건 충족 -교육공동체 대상 IB 교육과정 운영 현황 공유 -IB학교 필수 연수 이수(학교장, 코디네이터, 교사) -IBO 컨설턴트 방문 -IBO에 인증 신청 -IBO 평가관 확인 방문 -인증 전 단계 회비 납부 -IBDL(이중언어IB) 적용 IBO 분담금 납부	1년 6개월 ~ 2년	충남교육청 IBO
충남형 IB 인증학교	IB학교(IB World School)로 인증받은 학교 -IB 교육과정 운영 -교육공동체 대상 IB 교육과정 운영 현황 공유 -IB학교 필수 연수 이수(학교장, 코디네이터, 교사) -IB 월드스쿨 회비 납부 -IBDL(이중언어IB) 적용 IBO 분담금 납부 -5년 주기 재인증 심사	5년	충남교육청 IBO

3. 충남형 IB 준비학교와 초·중·고 연계 시범 교육지원청 지정·운영

가. 기간: 2023. 1. ~ 2024. 2.

나. 대상

순	지역	충남형 IB 준비학교			시범 교육지원청
		초	중	고(학급수)	
1	공주	석송초	공주여중, 유구중	공주고(1), 한일고(1)	○
2	부여	옥산초	-	-	-
3	아산	-	온양한울중	온양한울고(2), 충남외고(1)	○
4	예산	수덕초	-	덕산고(1)	○
5	청양	청양초	청양중	청양고(1)	○

※ 석송초(혁신학교), 충남외고(특목고), 공주고(자율학교)

※ 추후 직업계고 과정 IB학교 도입 방안 모색 예정

다. 충남형 IB 준비학교 운영에 따른 기관별 역할

운영기관	역 할	
	유형	세 부 내 용
초등학교	학교 전체형	▶ 충남형 IB 준비학교 운영 계획 수립·시행 ▶ 충남형 IB학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IB학교 운영을 위한 학습 및 이해 확산
중학교	학교 전체형	▶ IB학교 운영을 위한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학교문화 조성 ▶ IB 교육과정 적용으로 교육과정 특성화 방안 모색
고등학교	학급 선택형	▶ IB 철학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실천 방안 탐구 ▶ IB학교 교원 연수 이수 ▶ IB 관심학교-후보학교-인증학교 이행 준비 ▶ 2024학년도 자율학교(충남형 IB학교 유형) 신청 가능
초·중·고 연계 시범 교육지원청		▶ 교육공동체 대상 설명회 및 역량 강화 연수 등 단위학교 운영 지원 ▶ 교육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동일 학군(구) 초·중·고 초·중·고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마을자원 연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업 체제 구축
교육청		▶ IBO 본부 연계 IB 인증학교 절차 지원(준비학교-관심학교-후보학교-인증학교) ▶ 충남형 IB 준비학교와 시범 운영 행·재정적 지원 ▶ 충남형 IB학교 교원대상 연수 운영 지원 ▶ 충남형 IB학교 정책 설명회 및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연수 ▶ IB학교 운영 다양한 모델 탐색으로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업 체제 구축으로 충남형 IB학교 안착 지원

※ 충남형 IB 준비학교는 단위학교 교육공동체의 IB학교 운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단계로, 추후 다음 단계 이행 여부는 학교에서 자율 결정

4. IB 관심학교-후보학교-인증학교 이행 절차

대상	다음 단계 이행 방법	시기
준비학교	IBO 홈페이지에 관심학교 등록 관심학교 등록사실 도교육청에 공문 제출	학교 자율
↓		
관심학교(Consideration)	IBO 홈페이지에 후보학교 등록 후보학교 등록사실 도교육청에 공문 제출 후보학교 승인사실 도교육청에 공문 제출	매 학년도 1월 중 (심사기간 28일 소요)
↓		
후보학교(Candidacy)	IBO 홈페이지에 인증학교 신청서 제출 인증학교 신청현황 도교육청에 공문 제출	IBO 학교 방문 컨설팅 후
	IBO 검증단 방문 방문 IB 인증학교 현황 도교육청에 공문 제출	IB World School 인증 후
↓		
인증학교(World School)	5년간 IB 인증학교 운영	

5. 충남형 IB학교 유형 자율학교 지정·운영

- 가. 목적: 충남형 IB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화와 특성화 지원
- 나. 대상: 충남형 IB학교
- 다. 내용: 학교 희망에 따라 충남형 IB학교 유형 자율학교 신청

추진과제 2

충남형 IB학교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IB학교 업무 최적화를 위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1. IB학교 업무 전담 부서 운영

- 가. 목적: 충남형 IB학교 맞춤형 업무 재구조화를 통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나. 대상: 충남형 IB학교
- 다. 내용

- IB학교 코디네이터가 IB학교 업무 전담하도록 점진적으로 업무 개편
- IBO와 소통하기 위한 IB학교 전담 행정인력 확보 노력
- IB학교 수업 운영 지원을 위한 교원 확충 방안 마련

2. 충남형 IB학교 내 학년(군)별, 교과별 나눔 공동체 운영

- 가. 목적: 소통·공유·성장의 나눔 공동체 운영으로 IB학교 운영 내실화
- 나. 대상: 충남형 IB학교
- 다. 내용

- IB학교 운영 계획 공동 수립과 실천
- 학년별·교과별 IB학교 운영 사례 실천과 개선 방안 모색
- IB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수업 사례 나눔
- 소통을 바탕으로 한 IB학교 역량 강화 배움자리 참여와 배움 나눔
- 학생의 배움을 지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 문화 조성

IB학교 교육과정 문해력과 서·논술형 평가역량 신장

1. 개념과 탐구 기반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가. 목적: 개념과 탐구 기반 교육과정 문해력 신장을 위한 학습·성장 지원

나. 대상: 충남형 IB학교 교원

다. 내용

- 학교급별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IB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학습
- 개념 기반 교육과정 자율화와 특성화 역량 강화
-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역량 강화
-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를 실천하는 평가 체계 모색
- 교원의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IB학교 운영 체계 구축

2. IB학교 운영을 통한 서·논술형 평가 역량 신장

가. 목적: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역량 강화

나. 대상: 충남형 IB학교 교원

다. 내용

- 학생 선택 중심 학습 활동을 촉진하는 수업역량 강화
-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 과정 단계별 평가와 피드백 제공 역량 강화
- IB학교 운영을 통한 서·논술형 평가 역량 강화
- 학생의 성취 과정을 기록하여 학생 성장 지원

IB 교육과정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교육시설 조성

1. 개념 기반 탐구 중심 수업을 지원하는 학습 공간 조성

가. 목적: IB 인증학교 운영을 위한 효율적 공간 재구성

나. 대상: 충남형 IB학교

다. 내용: IB학교 인증 요건을 준수하는 학습공간 조성(과학실과 도서실 등)

1. 소통과 공유의 교원용 IB학교 수업 촉진실 마련

가. 목적: 소통과 공유를 지원하는 공간 마련으로 교과 융합 수업 활성화

나. 대상: 충남형 IB학교

다. 내용

- IB 교육과정을 적용한 수업 계획과 실천 사례 공유
- 학교 내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 촉진
- 교과 간·초학문적 융합 수업 연구 활동 지원

추진과제 3

충남형 IB학교 공감대 형성

충남형 IB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

1. 목적: 충남형 IB학교 도입·적용에 따른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대상: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IB학교를 운영하는 타 시도교육청
3. 내용: 충남형 IB학교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업무 협약

함께 성장하는 충남형 IB학교 협의체 운영

1. 충남형 IB학교 관리자 협의체

가. 목적: 학교급별·학교급간 IB학교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한 공동 성장

나. 대상: 충남형 IB학교 학교장

다. 내용: IB학교 운영 성과 나눔과 운영 체계 개선

2. 충남형 IB학교 코디네이터 협의체

가. 목적: IB학교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운영 전문성 신장

나. 대상: 충남형 IB학교 코디네이터(준비학교 업무 담당자)

다. 내용: IB학교 단계별 이행에 따른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업무 이해 역량 강화

3. 충남형 IB학교 운영 사례 나눔 배움자리

- 가. 목적: IB학교 운영 사례 나눔으로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충남형 IB학교 운영
- 나. 대상: 충남형 IB학교 교원
- 다. 내용: 학교별 운영 사례 나눔과 충남형 IB학교 운영 평가·결과 환류
- 라. 방법: 관리자, 코디네이터 협의체 운영 평가회와 함께 운영

교육공동체 대상 충남형 IB학교 이해 확산

1. 충남형 IB학교 운영 설명회

- 가. 목적: 미래형 교육과정으로써의 충남형 IB학교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
- 나. 대상: IB학교에 관심있는 보호자, 학생, 교원 등

2. 충남형 IB학교 홍보 자료 제작·배포

- 가. 목적: 충남형 IB학교 정책 이해 확산
- 나. 대상: 충청남도 학생, 보호자, 교원 등
- 다. 내용: 충남형 IB학교 정책 이해

추진과제 4

미래를 여는 충남형 IB학교 본보기 창출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본보기 창출

1. 목적: 학습자 성장을 지원하는 충남형 IB학교 기반 미래형 교육과정 본보기 창출
2. 내용
 - 초·중·고 연계 IB 교육과정 운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 분석
 -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IB학교 운영 사례 기반 본보기 제시
3. 시기: 2026년(충남형 IB 인증학교 운영 이후)

학습자 주도성 기반 과정중심 평가 모형 제시

1. 목적: 신뢰도와 공정성을 갖춘 미래형 평가 체계 구축
2. 내용
 - 충남형 IB학교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한 서·논술형 평가 모형 제시
 - 과정중심 평가 확산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내실화
 - 학습자 주도성과 비판적 사고력, 협업 기반 과정중심 평가 역량 강화
 - IB 공인 채점관 양성으로 신뢰도와 공정성을 갖춘 평가 역량 강화
3. 시기: 2026년(충남형 IB 인증학교 운영 이후)

VIII 기대 효과

- 다양한 유형의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 운영
-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시민을 키우는 미래교육 실현
-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과 평가 혁신으로 공교육 신뢰도 제고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25호
- 제 출 자 : 교육감
- 제출일자 : 2023년 10월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학교군」에 2025. 3. 1.자로 신설하는 고등학교를 추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2025. 3. 1.자로 신설하는 아산충무고등학교를 아산시 아산학군에 추가

4. 검토 의견

-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되어 2020년 10월 5일 공포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제2조(실시지역)에 아산시가 포함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학교군에 대한 세부사항을 변경하여 설정하고자 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 2025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아산충무고등학교는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조례 일부개정안」에 반영되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아산충무고등학교”를 아산시 학군에 추가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

나. 신규 대비표

다. 관련 법규 발췌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및 배정방법)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I.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II.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별표1]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학교군

지역	학군	학교명	지원 가능 중학교
천안시	천안학군	천안중앙고등학교 천안여자고등학교 천안두정고등학교 천안월봉고등학교 천안쌍용고등학교 천안신당고등학교 천안오성고등학교 천안업성고등학교 천안청수고등학교 천안불당고등학교 천안고등학교 북자여자고등학교 북일여자고등학교	아산시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를 제외한 충청남도 전체 중학교* * 음봉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천안학군 지원 여부는 ‘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에 따름
아산시	아산학군	온양고등학교 온양여자고등학교 온양용화고등학교 설화고등학교 배방고등학교 아산고등학교 온양한울고등학교 이순신고등학교 아산충무고등학교	아산시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 타 시·군 졸업예정자 중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군별 지원 가능 대상 여부는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음

[별표2]

특수지학교(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일반고등학교)

지역	학교명	주소
천안시	목천고등학교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145

※ 천안시 도시 규모의 확대 정도와 학교의 교육력 향상 정도를 판단하여 추후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학교군에 포함될 수 있음

신·구대비표

[별표1]

현 행				개 정 안			
지역	학군	학교명	지원 가능 중학교	지역	학군	학교명	지원 가능 중학교
아산시	아산 학군	온양고등학교 온양여자고등학교 온양용화고등학교 설화고등학교 배방고등학교 아산고등학교 온양한울고등학교 이순신고등학교	아산시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아산시	아산 학군	온양고등학교 온양여자고등학교 온양용화고등학교 설화고등학교 배방고등학교 아산고등학교 온양한울고등학교 이순신고등학교 아산충무고등학교	아산시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① <생략>

②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천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천에 의하여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간부 후기학교 중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천 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의 신입생은 교육감이 추천으로 배정하는 대신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할 수 있다.

④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야간부 신입생은 교육감이 각 학교에 통보한 입학전형에 관한 자료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학교군은 시·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군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2호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학교군을 설정하는 것으로 선언적(어떠한 방침을 외부에 표현하는 것)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교육혁신과장 정은영

2024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제626호
- 제 출 자: 교육감
- 제출일자: 2023년 10월 26일
- 회부일자: 2023년 10월 30일

2.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처분

(단위: m², 백만 원)

순	안 건 명	재 산 현 황				비 고
		종류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1	(구) 학 계 초 등 학 교 매 각 안	토지	6,300	248.2	522.9	

※ 기준가격 및 추정금액

종류	구분	기준가격	추정금액(소요액)
토지	취득, 처분	◦ 개별공시지가	◦ 가감정, 감정가격, 보상가격 등
건물	매입, 매각	◦ 주택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 가감정, 감정가격, 보상가격 등
	신축, 증축 등	◦ 건축비 등 사업비	◦ 건축비 등 사업비

4. 검토 의견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근거

○ (근거)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¹⁾과 처분²⁾에
관한 계획 수립

1) 취득 :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

2)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

○ 심사 대상

⇒ (취득·처분)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 1건당 기준가격 취득 20억원, 처분 10억원 이상인 재산이거나,
- 토지의 경우 1건당 취득 6,000㎡, 처분 5,000㎡ 이상인 재산

⇒ (변경)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아래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목적 또는 용도 변경
- 취득·처분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감된 경우

□ [구] 학계초등학교 매각안

-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1년)
- 위 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192-3
- 규 모: 토지 6,300㎡ (전체 부지면적 13,671㎡)
- 학교현황: 1992. 3. 1. 폐교
- 추정금액: 총 522.9백만 원

◇ 재산의 표시

(단위: m², 백만 원)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기준금액	추정금액
토지	홍성읍 학계리	192-3	학교용지	6,300	248.2	522.9

※분할 매각(토지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 변동될 수 있음)

전체면적	매각면적	비고(자체 활용 면적)
13,671m ²	6,300m ²	7,371m ²

※ 건물 8개동은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으로 철거 완료(2020. 12.)

○ (필요성) (구) 학계초등학교는 1992. 3. 1. 폐교 후 학계야영장, 도예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다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운동장 부지에 홍남초등학교 양궁부 연습장을 조성하여 활용중에 있으나, 향후 교육목적 활용계획이 없고, 홍성군에서 양궁부 연습장 활용 면적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분할 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992.03.01. 학계초등학교 폐교
- 2001. ~ 2013. 학계야영장 및 도예체험학습장으로 자체활용
- 2013. ~ 현재. 홍남초등학교 양궁부 연습장으로 자체활용 중
- 2020.12.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으로 건물 8개동 철거

- 2022.10.19. 홍성군의 폐교 활용의견 제시 (홍성군 교육체육과-13681)
- 2023.10.04. 홍성군의 폐교 부지 분할 매각 요청 (홍성군 교육체육과-14079)
- 2022.10.10. 2023년도 제5회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검토의견) (구) 학계초등학교는 향후 자체 활용 계획이 없으며, 홍성군에서 양궁선수 전용 훈련장 조성을 위해 분할 매입 요청함에 따라 교육재정 확충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폐교 분할 매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매각 예정면적에 현재 이용중인 홍남초 양궁연습장 진입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매각 후 홍남초 양궁연습장 진입로 설치 계획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됨

5. 첨부 자료

가. 2024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괄표)

나.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024년도 정기분(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총괄표

☒ 처분

- 토지

(단위: m², 백만 원)

순	안 건 명	소 재 지	면 적	기준가격	추정금액	비고
1	(구) 학 계 초 등 학 교 매 각 안	홍 성 군 홍 성 읍 학 계 리 1 9 2 - 3	6,300	248.2	522.9	

[구]학계초등학교 매각안

1.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1년)
2. 위 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192-3
3. 규 모: 토지 6,300㎡(전체 부지면적 13,671㎡)
4. 학교현황: 1992. 3. 1. 폐교
5. 추정금액: 522.9백만 원

◇ 재산의 표시

(단위: ㎡, 백만 원)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기준금액	추정금액
토지	홍성읍 학계리	192-3	학교용지	6,300	248.2	522.9

※분할 매각(토지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 변동될 수 있음)

전체면적	매각면적	비고(자체 활용 면적)
13,671㎡	6,300㎡	7,371㎡

※ 건물 8개동은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으로 철거 완료(2020. 12.)

6. 사업목적(필요성)

- 구 학계초등학교는 1992. 3. 1. 폐교 후 학계야영장, 도예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다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운동장 부지에 홍남초등학교 양공부 연습장을 조성하여 활용 중
-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으로 2020년 12월 건물 8개동 철거 완료

- 홍성군에서 양궁선수단 전용 훈련장 조성을 위하여 홍남초등학교 양궁부 연습장 활용 면적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분할 매각 요청
-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기에, 지자체에 건전한 목적으로 매각하여 교육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7. 사업내용

- 전체 부지(13,671㎡) 중 운동장 부지(7,371㎡)는 현재 홍남초등학교 양궁부 연습장으로 자체 활용 중

[홍남초등학교 양궁부 현황]

연혁	2023년 선수현황	입상현황
◦ 2014년 여자 양궁부 창단 ◦ 관내 유일 초등 여자 양궁부 ◦ 홍남초→홍성여중→홍성여고 →홍성군청 실업팀으로 연계	6명	◦ 전국소년체전 포함 연 5-6회 대회 참가 ◦ 전국소년체전 입상기록 - 2017년 35m 2위 - 2018년 30m 3위, 25m 2위, 3위 - 2019년 개인종합 3위 - 2021년 25m 1위, 20m 3위

- 건물을 철거한 미활용 일부 부지(6,300㎡)를 분할하여 홍성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함

◇ 홍성군 양궁선수단 전용 훈련장 조성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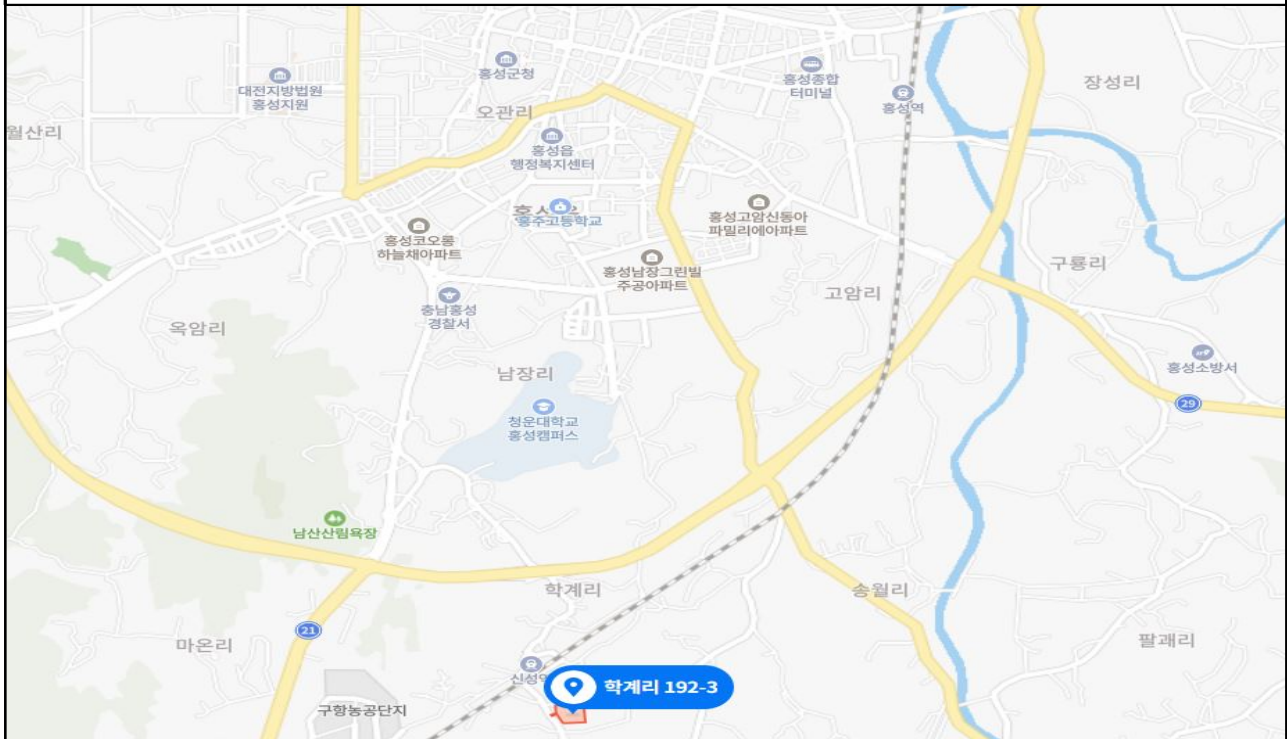
- 개 요: 홍성군에서 양궁선수단(성인) 전용 훈련장을 신설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훈련환경 조성
- 위 치: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192-3(구 학계초등학교 부지)
- 사업내용: 양궁훈련장 1식 3,000㎡ 조성, 훈련시설 1동 266㎡ 신축
- 사 업 비: 19억 원

8. 추진경과

- 1992.03.01. 학계초등학교 폐교
- 2001. ~ 2013. 학계야영장 및 도예체험학습장으로 자체활용
- 2013. ~ 현재. 홍남초등학교 양궁부 연습장으로 자체활용 중
- 2020.12.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으로 건물 8개동 철거
- 2022.10.19. 홍성군의 폐교 활용의견 제시(홍성군 교육체육과-13681)
- 2023.10.04. 홍성군의 폐교 부지 분할 매각 요청(홍성군 교육체육과-14079)
- 2023.10.10. 2023년도 제5회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위치도

1. 위 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192-3



2. 위성사진



3. 현장 사진(매각예정부지)



4. 현장 사진(자체활용부지: 홍남초등학교 양궁연습장)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시행]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9. 시행]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에서 “1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제4조 제3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서는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임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일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구 학계초등학교 매각은 세입의 순증가액에 해당하며, 비용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재무과장 김은정

